

### 38. 위탁금

☐ 위탁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80,2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3169 판결)

☐ 위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8,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

소위 환치기에 해당하는 해외송금행위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환거래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법규정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 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이어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설령 그 제한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환치기에 해당하는 해외송금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지법 1997.2.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

❖ 위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조○○에게 7,800,000원, 원고 김○○에게 11,500,000원, 원고 김○○에게 5,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위탁자통장의 기재상 하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증권매매위탁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증권위탁매매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회사의 상업사용인에게 증권매매를 위탁하면서 증권매입대금으로 금원을 교부하고 위 상업사용인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위탁자통장의 예입금액 액수앞에 취급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통장적요란의 입금기재에 회사의 고무인이 찍혀 있지 아니하고 사필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서울고법 1984.10.16. 선고 83나3719 판결)

❖ 위탁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888,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 5. 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포괄적 일임 매매거래를 하다가 주가의 하락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고객이 증권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할 주식의 수량, 가격 및 시기는 물론 그 종류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증권회사직원에게 일임하여 그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주식매매를 계속하여온 경우, 위와 같은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이 고객의 일임에 따라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를 한 것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탁금잔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추이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를 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서

울고법 1991.1.23. 선고 90나21577 판결)

☐ 위탁금반환등 청구(예비적 병합,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권○○에게 20,289,546원, 원고 서○○에게 50,000,000원, 원고 정○○에게 131,551,02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개인간의 소비대차에 불과할 뿐 증권회사에 증권매매위탁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방법으로 매도약정보고서나 가명으로 설정한 증권 매매위탁구좌에 입고된 증권청구서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86.11.3. 선고 85나3225 판결)

☐ 예탁주권등 청구

1. 피고는 원고 박○종에게 58,716,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오○림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증권을 받을 직무상권한이 있는 직원이 증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주식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위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공1994상, 1622)